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3
----------	-----

제출년월일 : 2021. 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개년 법정계획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심의 확정하기 위한 위원회 임
- 나.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안 제2조)
- 나.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안 제3조)
- 다.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2) 「교통안전법」 제13조(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1. 04. 23. ~ 2021. 05.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건설국장, 안전교통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평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평창군의회 의원
2. 평창경찰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3. 평창군교육지원청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4. 평창소방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5.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교통안전관리 담당자
6.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7. 교통안전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운수관련 종사자
8.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 혹은 교통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교통안전법 】

제13조(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 6. 1.>

②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2. 6. 1.>

③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6. 1.>

【 교통안전법 시행령 】

제8조(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 8. 19., 2012. 9. 7., 2018.

4. 24.>

②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 1. 7., 2012. 9. 7., 2018. 4. 24.>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

□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④ (비상설화) 제도적 절차, 주민 안전 등 필수적 사항을 다루지만, 안전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

< 개정 전 >	< 개정 후 >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자문을 위해...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좌 동> ④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안전교통과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연락처	(033) 330 - 2408